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5가합500588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8. 4. 26.

판결 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0,0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6. 7.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 한다)와 'A아파트 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200,788,100원, 계약보증금1,420,078,810원,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하이산업개발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하이산업개발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하이산업개발과 피고의 보증계약

1) 하이산업개발은 2012. 6. 15. 피고와 보증금액을 1,420,078,810원, 보증기간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한도
계약보증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시공계획서 대비 계획공정을 지체하여 전체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종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하이산업개발은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4.

하이산업개발에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4조 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3. 1. 28.과 2013.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1,420,078,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하이산업개발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도급인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인은 공사에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7일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7. 제5조에 의한 공사에정공정표상의 시공계획서 대비 계획공정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지연되어 전체공기 또는 연관공종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급인으로부터 3회 이상의 공사이행에 대한 촉구공문을 받고도 상당기간 내에 계획공정을 만회하지 못하거나 만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관련 민사소송

가) 하이산업개발로부터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2.

10. 26.부터 2012. 12. 25.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1,600,000,000원을양도받은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771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①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변경 등을 통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원고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하이산업개발에 원고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중 398,072,455원 부분을 인용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②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시로 돌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돌관공사 지시가 추정되지도 아니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면서, 원고의 일부 항변을 받아들여 B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B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31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9.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원고의 일부 항변을 받아들여 B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원고의 하이산업개발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하이산업개발의 공사 지체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결과 약정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하이산업개발에 대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라) B는 대법원 2017다2351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판단

-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이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398,072,45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하이산업개발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3하이산업개발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정공정표상 시공계획서 대비 계획공정이 하이산업개발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권경선, 판사 차윤제